

Procedures for Filing a Title VI Complaint

타이틀 6 규정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연방기금을 받은 수혜자로서,가교역사는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타이틀 6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와 혜택을 차별없이 공급해야함을 알립니다. 가교역사는 인종, 피부색, 혹은 국적에 따라 차별 받았다고 느끼는 참가자들이 타이틀 6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은 이의 제기자를 위해서 그 순서를 2012년 10월에 제정된 연방수송행정순환(the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Circle)에 기초하여 만들었습니다.

순서

정식으로 등록된 참가자는 아무나 가교역사나 행복원, 혹은 해리슨 행복원의 직원에 의해 인종, 피부색, 혹은 국적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타이틀 6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a. 비공식적 논의

차별대우를 했던 직원과 이의 제기자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법에 상관없이 팀장에게 그 논의 되었던 일을 보고해야 합니다.

b. 팀장과 함께 논의

만약 관련된 직원과 이의 제기자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팀장과 약속하여 의논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그 일이 일어난 후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서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무때나 이의 제기자는 증인이나 자신을 위한 대리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c. 원장과 함께 논의

만약 팀장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원 원장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하였던 이의 제기서를 행복원 원장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원장을 이의 제기서를 3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원장은 이의 제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자는 원장과 만난 후 5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장이 이의 제기자를 만날 수 없거나, 5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로부터 요청한 정보를 받지 못할 때, 원장이나 회사는 행정적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제기자가 더 이상 진행하고 싶어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d. 가교역사 이사회의 인사위원회

만약 원장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의 제기자는 타이틀 6 규저에 대한 이의제기를 회사 이사회의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중에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이의 제기자는 둘 중의 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마무리 서류 2) 사건 경위서(LOF).

마무리 서류에는 사건 경위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타이틀 6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아야 하고, 사건이 해결 되었음을 서술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서에는 관련된 사건과 인터뷰했던 것들, 어떤 경고나, 직원(들)의 훈련, 혹은 다른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 제기자가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를 원하면 당사자는 마무리 서류나 사건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 10 일 이내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2. 연방 교통국(FTA)에 직접 이의 제기

이의 제기자는 아무때나 “the Title VI Complaint Form”을 작성하여 연방 교통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서식은 웹사이트(<http://www.fta.dot.gov/civilrights/12884.html>)에 있습니다. 이의 제기자는 연락처와 자신이나, 대리자가 서명하고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Attention: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